

재난방송관련 국내 법령 분석

*전인찬 *임정탁 **최재웅 *최성중 ***이연
 *서울시립대학교 **방송통신위원회 ***선문대학교
 *raychani0@gmail.com

Analysis of Domestic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Public Alert and Warning

*Jeon, Inchan *Lim, Jung-Tak **Choi, Jae-Woong *Choi, Seong Jong ***Lee, Yeon
 *University of Seoul **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***Sun Moon University

요약

최근 들어 일본의 대지진과 같이 “위험사회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. 국가는 위험한 상황을 신속하게 국민에게 전달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하는 중요한 의무를 가진다. 이러한 국가의 의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가는 법령에 재난정보전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. 본 고에서는 우리나라의 법령 중 재난정보전달과 관련된 법령을 수집하여 분석한다. 이를 위해 헌법, 자연재해대책법,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, 방송통신발전기본법, 기상법, 마지막으로 민방위기본법과 관련 시행령을 조사하였다. 결론으로 이러한 법령과 관련 조치가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였다.

1. 서론

최근 들어 일본의 대지진과 같이 “위험사회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. 국가는 위험한 상황을 신속하게 국민에게 전달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하는 중요한 의무를 가진다. 본 고에서는 우리나라의 법령 중 재난정보전달 특히 재난방송과 관련된 법령에 대해서이다. 헌법, 자연재해대책법,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, 방송통신발전 기본법, 마지막으로 기상법과 이 들 법에 관련된 시행령 중에서 재난방송과 관련된 조항을 정리한다. 다음으로 각 법령과 이러한 법령의 시행을 위한 제도상의 문제점을 파악한다.

2. 재난방송에 관련된 법규

(1)헌법

①헌법 제2조 ‘국가는 법률에 의해 **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**가 있다’고 규정하고 있다.

- <NHK는 재외국민 해외안전정보 방송 실시>

②헌법 제34조 6항에서도 ‘국가는 **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**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’고 규정하고 있다.

(2)자연재해대책법

①제2조1항 “재해”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(이하 “기본법”이라 한다)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.

②제2조(정의) 2항 “자연재해”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해 중 **태풍·홍수·호우(豪雨)·강풍·풍랑·해일·조수(潮水)·대설·낙뢰·가뭄·지진(지진해일을 포함한다)·황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**

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.

3항 “풍수해”라 함은 태풍·홍수·호우(豪雨)·강풍·풍랑·해일·조수(潮水)·대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.

(3)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

제3조(정의)에서 “재난”이란 국민의 생명·신체·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.

①태풍, 홍수, 호우(豪雨), 강풍, 풍랑, 해일(海溢), 대설, 낙뢰, 가뭄, 지진, 황사(黃砂), 적조(赤潮)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

②화재, 붕괴, 폭발, 교통사고, 화재방사사고, 환경오염사고,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고로 발생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

③에너지, 통신, 교통, 금융, 의료, 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와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

제9조(중앙안전관리위원회) ①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의 심의 및 총괄·조정, 안전관리를 위한 관계 부처 간의 협의·조정,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안전관리위원회(이하 “중앙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⑥ 재난에 관한 **예보·경보·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방송**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**중앙위원회에 재난방송협의회**를 둘 수 있다.

⑦ 중앙위원회·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, **재난방송협의회**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1조(지역위원회) ④ 관할 지역의 재난 발생 시 효과적인 **재난방송 및 홍보를 위한 협조체계**를 마련하기 위하여 지역위원회에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관계 행정기관, 지역 방송사업자 및 단체 등이 대표자로 구성된 **지역재난방송협의회**를 둘 수 있다.

제34조(재난예방 교육·홍보)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의 안전의식 고취 및 재난관리를 위한 교육·홍보 계획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
(4)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

제9조(중앙안전관리위원회) ⑥ 재난에 관한 **예보·경보·통지나 응급 조치 및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방송**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**중앙위원회에 재난방송협의회**를 둘 수 있다.

⑦ 중앙위원회·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, **재난방송협의회**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38조(재난 예보·경보의 발령 등) ① 중앙본부장과 지역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면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.

제38조의2(재난 예보·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의 수립) ①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41조에 따른 위험구역 및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지구 등 재난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·군·구 재난 예보·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(이하 이 조에서 "시·군·구 종합계획"이라 한다)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 시·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(5)방송통신발전 기본법

제35조(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)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통신사업자(이하 "주요방송통신사업자"라 한다)의 방송통신서비스에 관하여 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」에 따른 재난이나 「자연재해대책법」에 따른 재해 및 그 밖에 물리적·기능적 결합 등(이하 "방송통신재난"이라 한다)의 발생을 예방하고, 방송통신재난을 신속히 수습·복구하기 위한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제37조(방송통신재난의 대비)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 지역의 방송통신 소통과 긴급 복구를 위하여 방송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그 사업자의 방송통신설비와 다른 방송통신사업자의 방송통신설비 또는 방송통신사업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방송통신설비(이하 "자가방송통신설비"라 한다)를 보유한 자의 방송통신설비를 통합 운용하게 할 수 있다.

제39조(방송통신재난 대책본부)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재난의 피해가 광범위하여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처가 필요한 경우에 방송통신재난 대책본부(이하 "대책본부"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제40조(재난방송) ① 「방송법」에 따른 기상과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2조에 따른 재해 또는 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」 제3

조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발생을 예방하거나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재난방송을 하여야 한다.

③ 방송통신위원회는 「방송법」에 따라 설립된 한국방송공사를 **재난방송의 주관기관**으로 지정할 수 있다.

제48조(과태료) ① '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재난방송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**3천만원 이하**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'고 규정하고 있다.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**1천만원 이하**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(6)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

<과태료의 부과기준>

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**500만원**의 과태료에 처한다.

<재난방송에 대한 평가>

- ① 지상파방송사업자(텔레비전방송)
- ② 지상파방송사업자(라디오방송)
- ③ 방송채널사용사업자(보도분야)

(7)기상법

제11조(관측 결과 등의 발표) 기상청장은 기상현상에 관한 관측 결과 및 정보의 신속한 발표가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**방송사·신문사·통신사, 그 밖의 보도 관련 기관(보도기관)을 이용**하거나 다른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즉시 발표하여야 한다.

제13조(일반인을 위한 예보 및 특보) ① 기상청장은 기상현상에 대하여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보 및 특보를 하여야 한다.

제14조(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한 예보 및 특보) ① 기상청장은 선박 또는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예보 및 특보를 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예보 및 특보의 종류·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6조(기상현상에 관한 긴급방송의 요청) ① 기상청장은 기상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기상현상에 관한 특보 등을 국민에게 긴급하게 전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「방송법」 제40조 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한 재난방송의 주관기관에 신속한 방송을 요청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재난방송의 주관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

제17조(예보 및 특보의 제한) 기상청장 외의 자는 예보 및 특보를 할 수 없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목적을 위한 경우와 「기상산업진흥법」 제6조에 따라 기상예보업의 등록을 한 자(기상사업자)가 예보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(8)민방위기본법

제33조(민방위 경보) 소방방재청장,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

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 또는 민방위 훈련을 실시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방위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.

(9)민방위기본법 시행령

제55조 (민방위 경보)

- ① 법 제33조에 따른 민방위 경보는 민방공을 위하여 발령하는 **민방공 경보**와 그 밖의 재난 시에 발령하는 **재난 경보**로 구분한다.
- ② 민방위 경보의 신호 방법과 전달 요령 등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.
- ③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방위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.
 1. 시·도지사 : 둘 이상의 시·군·구에 걸쳐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
 2. 시장·군수·구청장 : 해당 시·군·구에서만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
-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는 재난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.
 1. 홍수에 따른 재난 경보 : 지방국토관리청장(홍수예보 및 경보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수계의 경우에는 홍수통제소장을 말한다)
 2. 댐 등의 수문을 개방함에 따른 재난 경보 : 「하천법」 제39조제1항에 따른 댐등의 설치자(관리자를 포함한다) 또는 수력발전소의 책임자
-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민방위 경보를 발령한 자는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소방방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3. 결론

본 고에서는 재난방송과 관련된 우리나라 법령에 대한 조사/분석을 수행하였다. 다음은 이러한 분석의 결과이다.

방송통신위원회는 재난방송에 관련된 별도의 전담기구를 만들어서 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구성과 운영, 그리고 국가적인 재난방송대책과 기획, 관리감독 및 평가, 방송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의 산적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담당하게 해야 할 것이다. 나아가서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“재난방송 가이드라인”을 신속하게 제정하여 62개 재난방송 의무 방송사업자들에게 제시하고 각 사업자별 개별 매뉴얼을 만들도록 하고 지도해야 하며 IPTV, SNS 등을 활용한 재난방송을 위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할 것으로 본다.

행정안전부는 조속히 전담반을 신설하여 재난 및 안전기본법에 규정된 국가적인 재난방송지원은 물론, 재난 예보·경보체계 구축과 재난예방교육·홍보 등에 대한 교육도 실시해야 할 것이다. 나아가서는 재난 및 안전기본법에 의해서 광역 시·도에 재난예방교육 및 홍보수립지침을 시달함과 동시에 각 시·도의 재난유형별 홍보계획 수립 여부도 점검 지도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.

소방방재청은 재난방송에 관련된 예방과 복구 부분에서 어떻게 매체를 활용할지 담당부서를 지정해서 전담케 할 필요가 있다. 최근에는 스마트폰이나 DMB, SNS 등 뉴 미디어의 등장에 따른 재난방재 활동

도 미디어별로 다양화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으로 본다. 또한 민방위법과 재난및안전관리 기본법에 중복된 재난관리에 대한 규정을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해야 할 것이다.

기상청은 기상법에 따라 기상정보를 미디어를 통해서 국민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. 따라서 재난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떻게 하면 신속하게 재난정보를 국민에게 전달 할 수 있을지 연구해야 한다. 일본과 같이 조기경보체계(EWA)를 도입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. 그러기 위해서는 유관기관과 방송사 등과 긴밀한 공조체제가 필요하다고 본다.